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3~23p	문제-본문	02 다음 중 계약등기 우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맞춤형은 1회 및 월 발송물량에 제한이 없다. ② 일반형 계약등기의 요금은 통상요금, 중량 구간별 요금, 부가취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③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준다. ④ 일반형은 한 발송인이 1회 500통 이상, 월 10,000통 이상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선지 수정] ④ 일반형은 한 발송인이 1회 100통 이상, 월 5,000통 이상(두 조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26~26p	문제-본문	07 계약등기 우편의 부가취급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작불배달은 우편물의 요금을 배달할 때 수취인에게서 받는 제도이다. ② 우편주소 정보제공을 이용하려면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반환취급 사전납부는 일반형 계약등기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1년간은 등기우편물 반환율에 1%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④ 회신우편은 발송인이 사전에 배달과 회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계약편서와 협의하여 정한 계약등기 우편물이다. 반환취급 사전납부는 일반형 계약등기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1년간은 등기우편물 반환율에 0.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선지 수정] ③ 반송수수료 사전납부는 일반형 계약등기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1년간은 등기우편물 반환율에 1%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해설 수정] 반송수수료 사전납부는 일반형 계약등기 우편물을 대상으로 하며, 최초 1년간은 등기우편물 반환율에 0.5%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26~26p	문제-본문	08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번호 및 발행번호가 부여된 선납 라벨을 우체국 창구 등에서 구매하여 첨부하면 창구 외(우체통, 무인접수기)에서도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② 등기통상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 판매가격은 200g까지 1,800원(정액(단입)요금)으로 처리한다. ④ 접수채널은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 무인우편접수기이다. 선납 등기 라벨의 판매가격은 200g까지 1,800원(정액(단입)요금)으로 처리한다. 선납 등기 라벨 서비스의 판매가격은 송달일 차등 적용되는 등기통상우편물의 요금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다. • 기본: 송달일 통상우편요금 + 등기취급 수수료 • 선택: 익일특급 수수료, 배달증명 수수료	[선지 수정] ④ 접수채널은 전 관서 우편창구 및 우체통 투함, 무인우편접수기이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9~29p	문제-본문	11 계약등기 우편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형의 취급대상(물량기준)은 한 발송인이 1회 100통 이상, 월 5,000통 이상(두 요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이다. ② 착불배달, 회신우편, 본인지정배달, 우편주소정보 제공, 반환취급 사전납부 등의 부가취급서비스가 가능하다. ③ 맞춤형 계약등기 취급상품과 요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맞춤형은 1회 및 월 발송물량에 제한이 없다. 일반형 계약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부가취급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한 발송인이 1회에 500통 이상, 월 10,000통 이상(두 요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 맞춤형 계약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신분증류 등 배달 시 특별한 관리나 서비스가 필요한 우편물로 표준요금을 적용하는 상품 • 1회, 월 발송물량 제한 없음 • 취급상품과 요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	[선지 수정] ① 일반형의 취급대상(물량기준)은 한 발송인이 1회 500통 이상, 월 10,000통 이상(두 요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이다. ② 착불배달, 회신우편, 본인지정배달, 우편주소정보 제공, 반송수수료 사전납부 등의 부가취급서비스가 가능하다. [해설 수정] 일반형 계약등기 • 등기취급을 전제로 부가취급서비스를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 한 발송인이 1회에 100통 이상, 월 5,000통 이상(두 요건 모두 충족) 발송하는 등기통상 우편물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29~29p	문제-본문	12 다음 중 국내특급우편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무엇인가? ① 착불배달 ③ 등기 ② 본인지정배달 ④ 회신우편 해설 국내특급우편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등기취급과 배달중영이다(「우편법 시행규칙」 별표 2).	[선지 수정] ② 등기취급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31~31p	문제-본문	12 우편부가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체국축하카드든 일반통상우편과 등기통상우편 모두 가능하며 당일특급, 익일특급, 배달중명, 상품권 동봉서비스, 예약배달서비스가 가능하다. ② 고객맞춤형 엽서의 부가형은 희망하는 고객에게만 발송인·수취인의 주소·성명, 통신분까지 함께 인쇄하여 신청고객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발송까지 대행한다. ③ 광고우편엽서의 전국판은 4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동시에 판매하며, 최저 5만 장 이상 20만 장까지 발행한다. ④ 나만의 우표에 사용할 자료가 타인의 초상권,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받은 사용허가서나 사용 권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설 광고우편엽서 전국판은 최저 20만 장 이상 300만 장까지, 지방판은 최저 5만 장 이상 20만 장 미만으로 발행한다.	[선지 수정] ④ 나만의 우표에 사용할 자료가 다른 사람의 초상권, 저작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고객이 해당 권리자에게 받은 사용허가서나 그 밖의 사용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1~41p	문제-본문	01 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 청구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수취거부자(신고인)에게 손해 검사에 착관하도록 연락해야 한다. ② 배달우체국에서는 손해사실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집배원 또는 책임직이 수취거부 우편물의 외장 또는 무게의 이상유무, 직원의 고의나 잘못이 있는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③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편물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편물을 수취거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④ 신고를 받은 직원은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업무 담당자는 우편물류시스템에 사고접수내역을 등록한 후 배달우체국에 검사를 요청한다.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수취거부자(신고인)에게 손해 검사에 착관하도록 연락해야 한다.	[선지 수정] ① 우편고객센터의 조사 요청 시에는 당해 우편물의 접수 및 운송과정상 배상책임이 없는 관서에서도 손해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우편물류시스템 결과등록 및 승인할 수 있다. ② 손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우편고객센터와 우체국에서는 즉시 당해 우편물의 외장 또는 중량의 이상 유무, 우편관서의 고의·과실 유무 등을 검사한다. ③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우편물에 이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고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④ 손해배상 결정(처리)관서는 우체국 모바일앱이나 우편고객센터 및 우체국(자국 처리 제외) 청구 건의 경우 우편고객센터이고, 우체국 청구 건 중 자국 처리가 가능한 경우 손해배상 접수우체국이다. [해설 수정] 우편고객센터의 조사 요청 시에는 당해 우편물의 접수 및 운송과정상 배상책임이 있는 관서에서 손해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우편물류시스템 결과등록 및 승인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44~44p	문제-본문	더 알아보기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의 범위와 지급액 <table><tr><th>구분</th><th>지급 사유</th><th>실비 지급액</th></tr><tr><td>모든 우편</td><td>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신고한 경우</td><td>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td></tr><tr><td rowspan="2">EMS</td><td>중·후좌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td><td>무료발송권(1회 3만 원권)</td></tr><tr><td>한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분실이 생긴 때</td><td>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분실이 생긴 때</td></tr></table>	구분	지급 사유	실비 지급액	모든 우편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	EMS	중·후좌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	무료발송권(1회 3만 원권)	한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분실이 생긴 때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분실이 생긴 때	[해설 수정] 한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분실이 생긴 때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분실이 생긴 때																			
구분	지급 사유	실비 지급액																															
모든 우편	우체국 직원의 잘못이나 불친절한 응대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지급																															
EMS	중·후좌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때 3일 이상 지연 응대한 경우	무료발송권(1회 3만 원권)																															
	한 발송인에게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분실이 생긴 때	무료발송권(1회 10kg까지) ※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손실이나 분실이 생긴 때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45~45p	해설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금액 <table><tr><th>구분</th><th>손실·분실(최고)</th><th>지연배달</th></tr><tr><td rowspan="5">통상</td><td>일반</td><td>없음</td></tr><tr><td>중등기</td><td>5만 원</td></tr><tr><td>등기취급</td><td>10만 원</td></tr><tr><td>당일 특급</td><td>10만 원</td></tr><tr><td>익일 특급</td><td>10만 원</td></tr><tr><td rowspan="5">소포</td><td>일반</td><td>없음</td></tr><tr><td>등기취급</td><td>50만 원</td></tr><tr><td>당일 특급</td><td>50만 원</td></tr><tr><td>익일 특급</td><td>50만 원</td></tr><tr><td>익일 특급</td><td>50만 원</td></tr></table> ※ D는 우편물을 접수한 날을 말하며, 공휴일과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배달기한에서 제외한다.	구분	손실·분실(최고)	지연배달	통상	일반	없음	중등기	5만 원	등기취급	10만 원	당일 특급	10만 원	익일 특급	10만 원	소포	일반	없음	등기취급	50만 원	당일 특급	50만 원	익일 특급	50만 원	익일 특급	50만 원	[해설 수정] <table><tr><td>등기취급</td><td>50만 원</td><td rowspan="2">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td></tr><tr><td>안심소포</td><td>300만 원</td></tr></table>	등기취급	5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	안심소포	300만 원
구분	손실·분실(최고)	지연배달																															
통상	일반	없음																															
	중등기	5만 원																															
	등기취급	10만 원																															
	당일 특급	10만 원																															
	익일 특급	10만 원																															
소포	일반	없음																															
	등기취급	50만 원																															
	당일 특급	50만 원																															
	익일 특급	50만 원																															
	익일 특급	50만 원																															
등기취급	50만 원	D+3일 배달분부터: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수수료																															
안심소포	300만 원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6~46p	문제-본문	10 국내우편물에서 손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심사한다. 다음 중 심사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수취한 다음에 신고한 것은 아닌지 ②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한 것인지 ③ 청구자가 수취인이려면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것인지 ④ 원인이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한 것인지 심사한다. 더 알아보기 청구 심사가 끝나면 직장인 기간(기간)의 외(외)나 증명(증명)을 바탕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고 손해배상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낸다. 청구인은 금융장구를 통해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및 선지 수정] 국내우편물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의 심사할 사항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을 수취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닌가 ②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한 것인가 ③ 청구자가 수취인이려면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것인가 ④ 청구서의 사항이 구비되어 있는가 [해설 수정]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한 것인가 심사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결정 · 손해배상청구를 심사한 결과,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고조사결과 등 손해배상지급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안내한다. (알림톡, SMS 등) · 사고우편물 접수등록부터 우편물 배상금액이 결정되어야 하며, 등록된 배상액과 지급요구서상의 정보를 대사하여 일치할 경우에만 금융시스템에서 지급 가능하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47~47p	문제-본문	13 다음 중 국내우편물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우편물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안에 수취거부자(신고인)에게 손해 검사에 참가하도록 연락해야 한다. ② 수리비용 등 일부 손해를 배상한 경우 우편물을 내어줄 수 없다. ③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인데, 손해배상결정서를 받은 청구인은 우편물을 받은 날부터 5년 안에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배달우체국에서는 손해사실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정배일 또는 책임직이 수취거부 우편물의 외장 또는 무게의 이상 유무, 직원의 고의나 잘못이 있는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선지 수정] ① 우편고객센터의 조사 요청 시에는 당해 우편물의 접수 및 운송과정상 배상책임이 있는 관에서 손해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여 우편물류시스템 결과등록 및 승인한다. ④ 손해사실의 신고를 받은 우편고객센터와 우체국에서는 즉시 당해 우편물의 외장 또는 중량의 이상유무, 우편관서의 고의·과실 유무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접수·배달국에 조사를 요청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48~48p	문제-본문	더 알아보기 손해배상 우편물의 처리 ·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은 배상한 우체국에서 반송불능우편물 처리방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다만, 수리비용 등 일부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내어줄 수 있다. · 검사결과 손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손해검사조서서 1통은 우편물과 함께 수취거부자에게 보내고 1통은 해당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 손해가 있다고 신고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거나 총괄우체국으로 보내는 경우, 우편물 상태를 책임자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고받아야 하며 손해 상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해설 추가] · 손해배상금 지급 후 발견한 우편물은 배상금 수령자에게 우편물의 발견사실과 3개월 이내에 배상금을 반환하고 당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발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상금 수령자로부터 우편물의 교부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반송불능우편물의 처리에 의하여 취급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58~58p 번호 : 15	해설	종류별 배달방법 <table><thead><tr><th>우편물 종류</th><th>배달방법</th></tr></thead><tbody><tr><td>당일특급, 특급송달</td><td>3회 배달 후 보관하지 않고 반송</td></tr><tr><td>맞춤형 계약등기</td><td>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td></tr><tr><td>내용증명, 보험취급(외화 제외), 선거우편, 등기소포</td><td>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td></tr><tr><td>기타 등기통상</td><td>2회 배달, 4일 보관 후 반송</td></tr></tbody></table>	우편물 종류	배달방법	당일특급, 특급송달	3회 배달 후 보관하지 않고 반송	맞춤형 계약등기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	내용증명, 보험취급(외화 제외), 선거우편, 등기소포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	기타 등기통상	2회 배달, 4일 보관 후 반송	[해설 수정] <table><tbody><tr><td>맞춤형 계약등기(외화 제외)</td><td>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td></tr><tr><td>외화 맞춤형 계약등기</td><td>2회 배달 후 보관하지 않고 반송</td></tr></tbody></table>	맞춤형 계약등기(외화 제외)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	외화 맞춤형 계약등기	2회 배달 후 보관하지 않고 반송
우편물 종류	배달방법																
당일특급, 특급송달	3회 배달 후 보관하지 않고 반송																
맞춤형 계약등기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																
내용증명, 보험취급(외화 제외), 선거우편, 등기소포	2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																
기타 등기통상	2회 배달, 4일 보관 후 반송																
맞춤형 계약등기(외화 제외)	3회 배달, 2일 보관 후 반송																
외화 맞춤형 계약등기	2회 배달 후 보관하지 않고 반송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63~63p	문제-본문	04 국제특급우편물(EMS)에서 서류와 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류는 세관검사가 필요 없는 서류 등을 발송할 때 이용한다. ② 서류는 번호가 주로 E로 시작하는 운송장을 이용한다. ③ 비서류는 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이용한다. ④ 비서류는 일반적으로 번호가 B로 시작하는 운송장을 사용한다. 비서류는 일반적으로 번호가 E로 또는 ES로 시작하는 주소기표지(운송장)를 사용한다. 국제특급우편물(EMS) <table><tbody><tr><td>서류</td><td>서류 등을 발송할 때 이용하여, 번호가 주로 E로 시작하는 주소기표지(운송장)를 이용(서류기준: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서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td></tr><tr><td>비서류</td><td>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번호가 E로 또는 ES로 시작하는 주소기표지(운송장)를 사용(※ 사전통관정보 제공,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비교적용)</td></tr></tbody></table>	서류	서류 등을 발송할 때 이용하여, 번호가 주로 E로 시작하는 주소기표지(운송장)를 이용(서류기준: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서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	비서류	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번호가 E로 또는 ES로 시작하는 주소기표지(운송장)를 사용(※ 사전통관정보 제공,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비교적용)	[선지 수정] ① 서류는 편지류, 계약서, 홍보용 첨부물 등이 있다. ② 서류는 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를 이용한다. [해설 수정] 비서류는 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를 이용한다. 국제특급우편물(EMS) <table><tbody><tr><td>서류</td><td>서류 등의 발송 시 이용하며, 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를 이용 (서류기준: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서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td></tr><tr><td>비서류</td><td>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 이용 ※ 사전통관정보 제공,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비교적용</td></tr></tbody></table>	서류	서류 등의 발송 시 이용하며, 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를 이용 (서류기준: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서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	비서류	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 이용 ※ 사전통관정보 제공,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비교적용						
서류	서류 등을 발송할 때 이용하여, 번호가 주로 E로 시작하는 주소기표지(운송장)를 이용(서류기준: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서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																
비서류	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번호가 E로 또는 ES로 시작하는 주소기표지(운송장)를 사용(※ 사전통관정보 제공,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비교적용)																
서류	서류 등의 발송 시 이용하며, 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를 이용 (서류기준: 종이로 된 문서 형식의 편지류, 계약서, 입학서류, 서류와 함께 보내는 팜플릿 등 홍보용 첨부물, 다만, 서적, CD, 달력 등은 비서류 취급)																
비서류	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 시 이용하며, 비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 이용 ※ 사전통관정보 제공,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비교적용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67~67p 번호 : 14	해설	우체국과 계약하여 이용하여 최소 계약달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K-Packet의 특징 • EMS와 같은 경쟁서비스이며 고객맞춤형 국제우편 서비스로서 평균 송달기간은 7~10일 • 우체국과 계약하여 이용하여, 인터넷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이 제공하는 API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 우체국과 계약 시 최소 발송달수에 대한 제한 없음 →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시스템과 인터넷우체국 사업자포털시스템 간 우편번호, 종주적 정보, 접수정보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IT서비스 →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소형물품(2kg 이하)의 해외배송에 적합한 서비스로 'L'로 시작하는 우편물번호를 사용하며, 1회 배달 성공률 향상을 위해 해외 우정당국과 제휴하여 수취인 서명 없이 배달하기로 약정한 국제우편서비스 → K-Packet 제휴(서비스) 국가는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로 정함 • 월 이용금액에 따라 이용 요금 간격 •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 및 6급 이하 우체국별점국 포함에서 계약 가능하며 우편취급국은 총괄우체국이 접수국으로 지정한 경우 가능 • 무료 방문접수서비스 제공 및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 → 50만 이하 우체국에서 방문 접수를 제공하지 않음 → 계약관서의 인력·차량 사정에 따라 방문접수 또는 별도의 접수장소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국내에서 K-Packet을 등기소형포장물보다 우선 취급	[해설 수정]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발송실적이 없는 경우 우체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K-Packet의 특징 ... -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발송실적이 없는 경우 우체국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에서 계약 가능하며 우편취급국은 총괄우체국이 접수국으로 지정한 경우 가능 ... - 월 이용 금액이 50만 원 미만 및 계약한 우체국의 사정에 따라 방문접수는 제한될 수 있음 ...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73~73p 번호 : 02	해설	① 주소기표지의 제2면은 접수우체국에서 접수원부로 보관하고, 제3면은 발송인에게 교부한다. ② 국제소포우편물 운송장에는 도착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증장, 세관신고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서식을 별도 작성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발송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도착국가에서의 통관 수속에 필요한 모든 서류(상업용장, 수출허가서,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건강증명서 등)를 첨부할 수 있다. ③ 선편이나 항공편 중 하나를 택하여 × 표시한다.	[해설 수정] ④ 발송인이 배달불능 우편물을 반송받기를 원할 경우 'Return 반송'의 '항공·우선편 priority' 또는 '선편·비우선편 non-priority' 중 하나를 선택한다(국가에 따라 항공 또는 선편 반송이 불가능한 나라가 있으므로 우편물류시스템에 확인 후 선택하여 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75~75p	문제-문항	06 국제우편물 접수 시 점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가취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상대 국가에서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② 봉투의 일부분이 투명한 장분으로 된 것을 사용하느니 확인해야 한다. ③ 소형포장물은 통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 결과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보완하여 재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접수를 거절한다.	[선지 수정] ③ 종별은 무엇이고 포장은 적절한지 확인해야 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77~77p 번호 : 09	해설	도착국가 우체국 소포우편물 배달시도 시 배달 불능의 경우 '포기'와 '반송'을 발송인이 우편물 접수 시 선택하도록 한다. 발송인이 반송받기를 원하지 않은 경우 '□ Treat as abandoned 포기'를 선택하여 V 또는 × 표시한다. 발송인이 반송받기를 원할 경우, 항공 또는 선편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여 V 또는 × 표시한다(해당 운송편으로 반송 가능한지 포스트넷에 확인 후 기표지에 표시). 발송인의 지시사항이 없거나 지시사항이 모순되는 경우에는 별도통보 없이 소포우편물을 반송 조치토록 되어 있음에 유의한다.	[해설 수정] • 발송인이 배달불능 우편물을 반송받기를 원치 않을 경우 '□ Treat as abandoned 포기'를 선택한다. • 발송인이 배달불능 우편물을 반송받기를 원할 경우 'Return 반송'의 '항공·우선편 priority' 또는 '선편·비우선편 non-priority' 중 하나를 선택한다(국가에 따라 항공 또는 선편 반송이 불가능한 나라가 있으므로 우편물류시스템에 확인 후 선택하여야 한다). • 발송인 선택사항이 없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소포우편물을 반송 조치토록 되어 있음에 유의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77~77p	문제-본문	10 다음 중 통관에 회부하여야 할 통상우편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형포장물 ② 세관표지 및 세관신고서가 붙어있는 통상우편물 ③ 세관장이 특히 통관감사에 부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통상우편물 ④ 시각장애인용 우편물 통상우편물 중 통관에 회부하여야 할 우편물 • 소형포장물 • 세관표지(CN22) 및 세관신고서(CN38)가 붙어있는 통상우편물 • 통관우체국장이나 세관장이 특히 통관감사에 부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통상우편물	[문제 및 선지 수정] 수집 우편물의 처리에서 요금 미납·부족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집우체국에서는 부전을 붙여 발송인에게 반송, 미납 요금 보정을 요구한다. ② 발송인의 주소가 없는 우편물은 수집우체국에서 국제우체국으로 별도 송부하고 국제우체국에서는 'T' 처리하여 발송한다. ③ 국제우체국에 보내진 발송우편물 중 발송인 주소와 성명이 기록된 우편물은 '요금미납' 등의 표시를 하여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그 사실과 미납요금액을 수취인에게 통지한다. ④ 등기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 등의 요금 미납·부족 발견 시, 우편물은 정당 수취인 앞으로 우선 발송한다. [해설 및 정답 수정] • 국제우체국에 보내진 발송우편물 중 요금 등의 전부나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우편물의 처리 - 발송인 주소·성명이 기록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해당 우편물에 '요금미납' 등의 표시를 하여 수취인에게 발송, 그 사실과 미납요금액을 발송인에게 통지, 발송인에게 미납·부족 요금 징수, 미납·부족 요금 추징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를 확인한 후 관서장 판단으로 종결 처리 - 발송인의 주소와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우편물은 'T' 처리 후 발송. 항공보통통상우편물은 항공편으로, 선편보통통상우편물은 선편으로 발송 [답] ③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80~80p 번호 : 18	해설	② 배달통지는 모든 우편물(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특급우편물)을 취급대상으로 한다. ③ 보험가액의 최고한도는 4,000SDR(7백만 원)까지이나, 선(대)국에서 취급하는 최고한도액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선(대)국의 취급한도액 범위에서 취급한다. ④ 도지거나 유리컵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보험취급하여 발송할 수 없다.	[해설 수정] ③ 보험가액의 최고한도는 4,000SDR(7백만 원)까지이나, 우편물 종별에 따라 국가별 최고한도액이 다르므로 국제우편물발송조건을 참고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82~82p	문제-문항	03 국제우편요금의 벌납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송인이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요금벌납인을 선임한다. ② 발송 기준 통상우편물 10통 이상을 취급요건으로 한다. ③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④ 한 사람이 한 번에 같은 우편물(동일무게)을 보낼 때에 우편물 외부에 요금벌납 표시를 하여 발송하고 우편요금은 별도로 즉납하는 제도이다.	[문제 및 선지 수정] ④ 한 사람이 한 번에 같은 우편물(동일무게)을 보낼 때에 우편물 외부에 요금벌납 표시를 하여 발송하고 우편요금은 우표첨부 없이 별도로 즉납하는 제도이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86~86p	문제-본문	01 EMS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의 합이 300cm를 초과할 경우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② 무게 산정 시 실중량과 체적중량(가로cm × 세로cm × 높이cm/6,000) 중 무거운 중량이 적용된다. ③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계류를 통한 시너지를 제고한다. ④ SMS 배달안내, Export/Import 수취인 요금부담, 통관대행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 부피 제한: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의 합이 400cm 초과 불가(최대 길이 274cm 이하)	[선지 수정] ①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의 합이 300cm를 초과할 경우 UPS 측에 연락하지 않고 접수한다. ... ④ EMS 프리미엄 부가서비스 7종을 제공한다. [해설 수정] EMS 프리미엄 서비스 부피 제한: 우편물의 길이와 둘레의 합이 400cm 초과 불가(최대 길이 274cm이하, 둘레 300cm가 넘는 우편물 UPS측에 연락 후 접수)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87~87p	문제-본문	02 EMS 프리미엄 주요 부가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통관대행은 EMS 계약 고객에 한해 접수우편물의 수출통관을 대행하는 서비스이다. ② 고중량특송 서비스는 30kg 초과 70kg 이하의 고중량화물을 팔레트 단위로 Door to Door 방식으로 배송하는 전문 특송 서비스이다. ③ Export 수취인 요금부담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의 요금을 도착국의 수취인이 지불하는 서비스로 수취인이 개인인 경우 접수가 제한된다. ④ 고중량 우편물의 개인, 계약고객에 대한 방문접수는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수행한다. ① 통관대행은 우편 고객개인 및 EMS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② 고중량특송: 70kg 초과 고중량화물을 팔레트 단위로 Door to Door 방식으로 배송하는 전문 특송 서비스이다. ③ 고중량 우편물의 개인, 계약고객에 대한 방문접수는 5급 이상 통물 우체국에서 수행한다(부속이한 경우 UPS 자원이 나 대리점에서 방문접수 가능).	[선지 수정] ① 수출신고서 발급대행은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② 고중량화물 서비스는 30kg 초과 70kg 이하의 고중량 화물을 팔레트 단위로 Door to Door 방식으로 배송하는 전문 특송 서비스이다. [해설 수정] ① 수출신고서 발급대행은 우편취급국을 포함한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② 고중량화물 서비스는 70kg 초과 고중량화물을 팔레트 단위로 Door to Door 방식으로 배송하는 전문 특송 서비스이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88~88p	문제-본문	04 EMS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칙적으로 사서함 주소 접수가 불가능하지만, 발송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시 가능하다. ② EMS 프리미엄 주요 부가서비스에는 SMS 배달안내, 통관대행, Export/Import 수취인 요금부담, 고중량특송 서비스 등이 있다. ③ 비서류 접수 시 체적무게가 70kg을 초과할 경우 EMS 프리미엄으로 발송할 수 없다. ④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품명, 물건 개수, 물품가격을 명분으로 기록해야 한다. 행방조사청구제도의 청구기한 비서류 접수 시 실체무게가 70kg 초과될 경우에는 EMS 프리미엄으로 발송할 수 없지만, 체적무게가 70kg 초과될 경우에는 기표지를 2장으로 하여 발송 가능하다.	[선지 수정] ② EMS 프리미엄 주요 부가서비스에는 Export/Import 수취인 요금부담, 고중량화물 서비스 등이 있다. ③ 비서류 접수의 취급한도는 60kg이다. [해설 수정] 비서류 접수의 취급한도는 70kg이다. 체적중량과 무게(저울)중량을 비교하여 높은 중량을 적용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91~91p 번호 : 05	해설	행방조사청구제도의 청구기한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6개월 이내(대만, 국제특급 우편물의 경우에는 4개월 이내) ※ EMS 프리미엄의 청구기한은 발송한 날부터 3개월, 배달보장서비스는 30일 이내	[해설 추가] ※ EMS 프리미엄의 행방조사 청구기한은 발송한 날부터 3개월, 배달보장서비스는 30일 이내, K-Packet은 발송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98~98p	문제-본문	03 선택등기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급대상은 2kg(특급 취급 시 30kg) 이하 통상우편물이다. ② 전자우편, 이일특급, 계약등기, 발송 후 배달중명 부가취급이 가능하다. 우편함에 배달이 완료된 경우에는 발송 후 배달중명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이다. ④ 손실 또는 망실일 때 최대 5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한다. 배달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손실 또는 망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① 취급대상은 6kg까지 통상우편물이다(특급 취급 시 30kg 가능). ② 배달기한은 접수한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이다. ④ 손실·망실일 때 최대 1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하며, 배달완료(우편함 등) 후에 발생한 손실·망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지 수정] ④ 손실 또는 분실일 때 최대 5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하나, 배달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손실 또는 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설 수정] ④ 손실·분실에 한하여 최대 1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제공하며, 배달완료(우편함 등) 후에 발생한 손실·분실은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101~101p 번호 : 06	해설	06 국내우편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다. ㉠ (X) 모사전송(팩스) 우편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고시하는 우체국에서만 취급할 수 있다. 우편취급국은 제외하고, 군부대 내에 소재하는 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고시하는 우체국만 가능하다. ㉡ (O) 나만의 무료 홍보물 신청 시에는 기본 이미지 1종 외에 큰 이미지 1종을 우상으로 제공한다. ㉢ (O) 고가의 고액맞춤형 일부를 교환 요청한 때에는 훼손입사로 규정하여 교환금액한정 10원을 수납한 후 액면금 액에 해당하는 무료 임시 항공사(인)로 교환해 준다. ㉣ (X) 우체국하이브리드 발송 시, 결재카드와 함께 2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함께 발송할 수 있다.	[해설 수정] ㉢ (X) 우체국축하카드 발송 시, 축하카드와 함께 2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화상품권을 함께 발송할 수 있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109~109p 번호 : 19	해설	19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대상이 되는 우편물은 EMS, 국제소포, 등기소형포장물이다. 그중에서 EMS를 스마트 접수할 경우 5% 할인이 적용된다. 더 알아보기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시스템 처리도(우체국 방문접수) 발송정보 입력 (고객) 정보 자동연계 (우체국) 우체국 방문 (고객 → 우체국) 접수처리 (우체국) 배출 (우체국)	[해설 수정] ② 국제우편 스마트 접수 대상이 되는 우편물은 EMS(EMS 프리미엄), 국제소포(항공·선편), 등기소형포장물(항공)이다. 그중에서 EMS(EMS 프리미엄은 사전접수 요금할인 없음)와 등기소형포장물을 스마트접수할 경우 5% 할인이 적용 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111~111p 번호 : 01	해설	더 알아보기 계약등기 우편제도 추가취급수수료 <table><thead><tr><th>부가취급 서비스</th><th>수수료</th><th>비고</th></tr></thead><tbody><tr><td>화신우편</td><td>1,500원</td><td rowspan="3">일반형 및 맞춤형 계약등기</td></tr><tr><td>본인지정배달</td><td>1,000원</td></tr><tr><td>착불배달</td><td>500원</td></tr><tr><td>우편주소 정보제공</td><td>1,000원</td><td rowspan="2">일반형 계약등기</td></tr><tr><td>반환접수 사전납부</td><td>반환접수 수수료 × 반환율</td></tr></tbody></table>	부가취급 서비스	수수료	비고	화신우편	1,500원	일반형 및 맞춤형 계약등기	본인지정배달	1,000원	착불배달	500원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원	일반형 계약등기	반환접수 사전납부	반환접수 수수료 × 반환율	[해설 수정] 계약등기 우편제도 추가취급수수료 <table><thead><tr><th>부가취급 서비스</th><th>수수료</th><th>비고</th></tr></thead><tbody><tr><td>화신우편</td><td>1,500원</td><td rowspan="3">일반형 및 맞춤형 계약등기</td></tr><tr><td>본인지정배달</td><td>1,000원</td></tr><tr><td>착불배달</td><td>500원</td></tr><tr><td>우편주소 정보제공</td><td>1,000원</td><td rowspan="2">일반형 계약등기</td></tr><tr><td>반송수수료 사전납부</td><td>반송수수료 × 반환율</td></tr></tbody></table>	부가취급 서비스	수수료	비고	화신우편	1,500원	일반형 및 맞춤형 계약등기	본인지정배달	1,000원	착불배달	500원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원	일반형 계약등기	반송수수료 사전납부	반송수수료 × 반환율
부가취급 서비스	수수료	비고																															
화신우편	1,500원	일반형 및 맞춤형 계약등기																															
본인지정배달	1,000원																																
착불배달	500원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원	일반형 계약등기																															
반환접수 사전납부	반환접수 수수료 × 반환율																																
부가취급 서비스	수수료	비고																															
화신우편	1,500원	일반형 및 맞춤형 계약등기																															
본인지정배달	1,000원																																
착불배달	500원																																
우편주소 정보제공	1,000원	일반형 계약등기																															
반송수수료 사전납부	반송수수료 × 반환율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17~117p 번호 : 09	정답	③ 요금별납 우편물 및 요금후납 우편물에는 우편납피도장 납인을 생략한다. ① 국제우편 요금별납은 한 사람이 한 번에 같은 우편물(동일무게를 보낼 때에 우편물 외부에 요금별납[POSTAGE PAID] 표시를 하여 발송하고 우편요금은 별도로 착납하는 제도로 우편취급국을 제외한 모든 우체국에서 취급한다. ② 국제우편요금의 후납은 동일인이 매일 100통 이상 발송하는 국제 통상우편 및 국제 소포우편물을 대상으로 한다. ④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시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편 상으로 별도 우편지루 체결·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단단히 묶어서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한다.	[해설 수정] ④ 국제우편요금의 별납 시 접수된 우편물은 국제우편물류센터나 부산국제우체국 앞으로 별도 우편자루 체결·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단단히 묶어서 다른 우편물과 함께 발송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123~123p 번호 : 17	해설	④ K-Packet은 2kg 이하 소형물품의 해외배송에 적합한 우편서비스로, K-Packet 운송장의 발송인란에는 통관, 손해배상, 반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한 명의 주소·성명을 기재한다. ① 기합소포우편물의 중량은 10g 단위로 표시하고, 10g 미만의 단수는 10g으로 절상한다. 선지로 제시된 8kg 883g의 경우 8,900g으로 7통한다. ② 우편지배배달인(M-bag)을 접수할 때에는 하나의 통상우편물로 취급하며, 우편요금과 별도로 통관절차대행수수료 4,000원을 징수한다. ③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운송장은 내용물에 따라 서류용과 비서류용의 2가지로 구분하며, 서류 등을 발송할 때는 반포기 주로 반포기 시작하는 운송장을 이용하고, 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비서류)는 일반적으로 반포기 EM 또는 ES로 시작하는 운송장을 사용한다.	[해설 수정] ③ 국제특급우편물(EMS)의 운송장은 내용물에 따라 서류용과 비서류용의 2가지로 구분하며, 서류 등을 발송할 때는 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를 이용하고, 서류 이외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비서류)는 비서류용주소기표지(운송장)를 이용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123~124p	문제-본문	18 국제특급우편(EMS) 주요 부가서비스 및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출우편물 발송확인 서비스 대상 우편물의 경우, 발송인은 수리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 우편물을 선적 또는 기적해야 한다. ②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1~5개 지역 및 서류용과 비서류용으로 구분되며, 최고 7천만 원까지 내용물의 가액에 한해 보험 취급이 가능하다. ③ EMS 프리미엄의 부가서비스인 고중량 특송 서비스는 전국 우체국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체국과 계약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④ 2003년부터 EMS 배달보장서비스가 시행되어 운영 중이며, 실무에서 처리할 경우, 도착 국가에서 통관 서류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배달은 배달완료로 간주한다.	[선지 수정] ③ EMS 프리미엄의 부가서비스인 고중량화물 서비스는 전국 총괄 우체국(5급 이상)에서 접수 가능하며, EMS 계약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수정 사유	우정사업본부 배포 우편상식 학습자료 업데이트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